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0. . . (제 회)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진영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19.12.10.)됨에 따라 소하천 관련 기술을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에게 소하천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정비종합계획·중기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중 기초·타당성 조사 등 전문성과 기술력 등 경험이 풍부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선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소하천 점·사용에 따른 점용료 등의 감면 기준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소하천 설계기준 신설(안 제2조의2)

행정안전부장관은 소하천등 정비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함.

나.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근거 신설(안 제6조의2)

대행하려는 자의 능력, 사업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하도록 함.

다. 점·사용 허가를 폐지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규정 신설(안 제14조의2)

소하천등 정비 허가나 점·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가 실효되거나 점·사용을 폐지한 경우 원상회복 의무를 규정

라.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시 통지방법 등을 근거 신설(안 제21조의3)

타인의 토지에 출입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게시하거나 공고한 후 14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함.

마. 타인의 토지에의 무단으로 출입한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안 제23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등과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 00. ~ 2. 00.)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 중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설계기준) ① 법 제4조의4의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
2. 소하천관련 기술의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유상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제4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대행자의 선정 등) ① 법 제8조의2의 제2항에 따른 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행하려는 자의 능력, 사업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행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4항”을 “법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5항”을 “법 제7항”으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법 제16조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유수의 점용으로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등 토지의 형상변경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소하천정비를 병행한 점용으로 추가적인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소하천의 재해예방,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소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1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전기통신시설”을 “통신시설”로 한다.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면제
2.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
3. 법 제2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관리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②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4.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기 위한 경우
5.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제21조의3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법 제2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방법”이란 관리청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하거나 공고한 후 14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제4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 ③ (생략)

④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검토한 결과,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⑤ (생략)

<신 설>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기준에 관한 도서(圖書) 등을 작성하여 유상으로 보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의2(대행자의 선정 등) ①

법 제8조의2의제2항에 따른 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대행하려는 자의 능력, 사업 수행 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대행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8조(소하천등 정비의 준공검사)

① 소하천등 정비를 시행하는 자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③ 관리청은 소하천등 정비의 준공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 5. (생략)

<신설>

정하여 고시한다.

제8조(소하천등 정비의 준공검사)

① -----
--- 법 제10조제6항-----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법 제10조제7항-----

-----.

1. ~ 5.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법 제16조제1항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유수의 점용으로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등 토지의 형상변경이 없어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소하천정비종합계획에 따라 소하천정비를 병행한 점용으

제15조의2(점용료 등의 감면) <신
설>

<신 설>

로 추가적인 원상회복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소하천의 재해예방,
환경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
향이 적고 소하천의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이 없어 원상회복
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15조의2(점용료 등의 감면)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관리청
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 해당
하는 경우: 전액 면제

2.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 해당
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

3. 법 제22조제4항제3호에 해당
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
한 사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관
리청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에 따라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②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법 제2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신 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4.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기 위한 경우

5. 군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③ -----

----- 통신시설 -----

-----.

제21조의3(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법 제2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지방법”이란 관리청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게시하거나 공고한 후 14일이 지나지 아니하면 해당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u><신 설></u>	<u>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 29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재난경감과	
연 락 처	(044) 205 - 5147